

—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6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6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6월 21일

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
기금에 대한 관리자 지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
⇒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
- 장학기금(새마을사업용 양회회 공대처분금, 폐품처분금, 기탁성금)
⇒ 기금의 재원(국가, 자치단체출연금, 기금운용수익금, 기타 수익금)
- 기금운용위원회 구성·기능 규정
- 기금관리공무원지정 ⇒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
- 장학생의 정원규정(7%)

라. 참고사항

- 창원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양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.
- 기존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되 결산조항 등을 신설한 전면개정 조례안임.
- 부칙 제2조(적용례) “중학교 의무교육이 끝나는”은 “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”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